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제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달서구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을 심의하는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바.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공모결과에 대해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및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

나. 사업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신청·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달서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가 신청한 국비·시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③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한 교수 등 전문가 3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은 임기가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의회보고)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공모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